

# 2023년도 상반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입주모집 공고

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,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을 촉진시키고, 유망한 기업인 양성을 위해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예비 창업가 및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. 3. 6.

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

## ■ 모집개요

1. 공고기간 : 2023. 3. 6.(월) ~ 4. 5.(수)
2. 접수기간 : 2023. 3. 29.(수) ~ 4. 5.(수) 16:00
3. 센터위치 : **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11**
4. 입주기간 : 2023. 4. 14. ~ 2023. 10. 13.
5. 모집대상 : 7개사(예정)
  - 입주기간 : 6개월 (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2년 입주 가능)
    - ※ 최대 입주 가능 기간은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  - 입주 개시 후 1개월 이내 입주 포기 및 퇴소자 발생 시, 차점자 추가 선발
    - ※ 최소기준 (평균 60점이상) 불충족 시,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    - ※ 단, 정부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45일 이내 미창업시 센터와 협의 할 수 있음.

## 6. 지원자격

### ○ 지원자격

- 예비창업자 :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,  
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
- 기창업자 :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,  
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

## ○ 지원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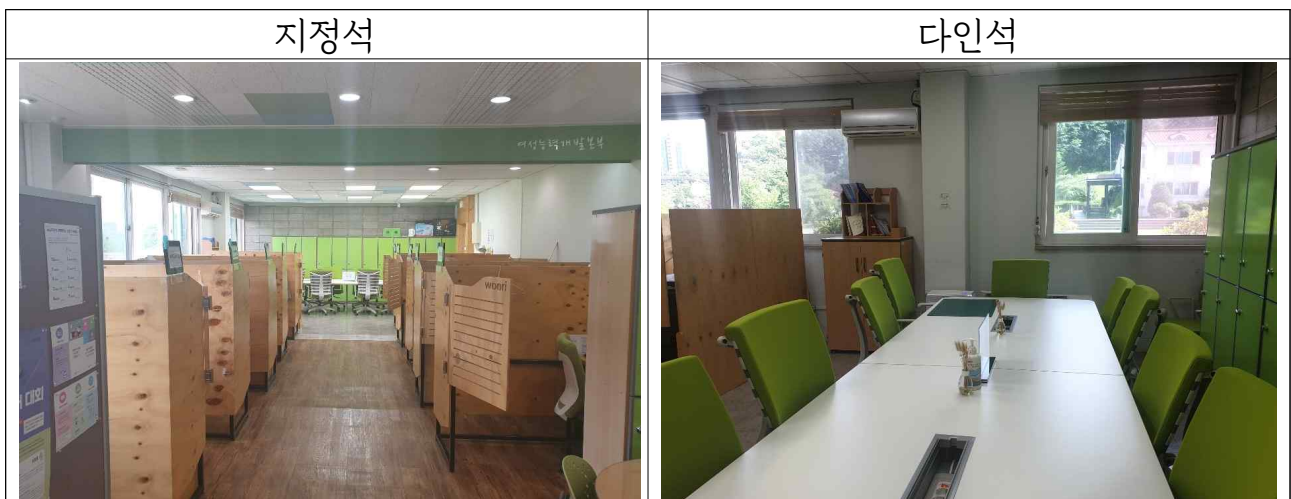
-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(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)
  - ※ 창업예정자는 입주 후 45일 이내 미 창업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창업 시 입주선정 취소됨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에 해당하는 자
-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 인자

## 7. 의무사항(불이행시 계약 취소)

- 입주 후 4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(이전) 후,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
- 사무공간 활용 : 주2회 이상 사용
- 분기별 사업추진 보고서 제출

## 8. 주요 지원사항

- 공용 사무공간 및 공용 사무기기 제공
- 전문가 자문 및 창업교육, 사업화지원 등 경영지원
- 기타 센터 편의시설 이용 등



## 9. 제출서류 (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
-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. (필수서류, 지정서식)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. (필수서류, 지정서식)
- 증명사진 첨부된 이력서 1부. (필수서류, 자유서식)
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. (필수서류)
- 지방세, 국세 납입 증명서 각 1부. (필수서류)
-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1부. (필수서류)
-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. (해당자)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1부. (해당자)
- 주민등록등본 1부. (해당자)
-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. (해당자)
- 가점 및 기타 증빙 각 1부. (해당자)
  - ※ 가산점 항목 및 기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점수에 인정되지 않음
  - ※ 기타증빙 : 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, 교육수료증 등

## 10. 심사방법 및 선정절차

- 심사방법 :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심사
- 1차 심사 : 1인 창조기업 자격요건(창업업종, 주소지 등) 서면심사 후 2차 심사여부 결정
- 2차 심사 : 사업능력, 입주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한 대면 평가

| 평 가 항 목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 점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창업자역량      | - 창업자 전문성, 사업추진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|
| 사업계획의 적정성  | - 계획 및 목표의 구체성, 제품(기술)의 차별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|
| 기술성        | - 제품(기술)의 파급력, 기술구현의 현실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|
| 시장성        | -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, 시장진출 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          |
| 고용 및 수출잠재성 | - 수출가능성, 고용창출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          |
| 기타         | - 입주희망사유, 입주 후 활동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|
| 가점         | - 최근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<br>- 만39세 이하 청년창업자<br>-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<br>- 센터의 해당연도 중점특화분야(전자상거래)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<br>-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추천기업<br>- 재창업기업(폐업사실확인서 제출必, 성실경영평가 통과자(1점)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(3점)) | 최대3점<br>(각1점) |

※ 2차 면접심사 불참 시 0점 처리

※ 심사위원 합산 평균 60점 이상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입주업체를 선발함

- ※ 2차 발표심사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
- 선정절차 : 신청서 제출 → 1차 심사 → 2차 심사 → 최종 입주자 선정
- 결과통보 : 심의 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
  -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및 2차 심사 공지 : 홈페이지만 공지
  - 최종 합격 발표 :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

## 11. 접수 및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23. 3. 6.(월) ~ 4. 5.(수) 16:00까지(기한 엄수)
- 접수방법 : 홈페이지 접수 및 우편, 현장 접수
  - 홈페이지 접수 : 꿈마루 홈페이지 (www.dreammaru.or.kr)
    - ※ 꿈마루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입주신청에 서식 업로드 제출  
(꿈마루 홈페이지 로그인 > 공간태판 > 입주신청 > 글쓰기 > 첨부파일 업로드)
  - 현장 접수 : 접수기간 내 현장 방문 제출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  - 우편 접수 :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(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 확인)
    - ※ 우편접수 주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11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 
복합동 2층 기업지원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담당자
    - ※ 우편 또는 인터넷 제출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한 후  
접수증을 받으셔야 하며, 미수신 미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## 12. 기타사항

- 모집관련 상세내용 [www.dreammaru.or.kr](http://www.dreammaru.or.kr) 공지
- 문 의 처 : 031-270-9788(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담당)

## [참고 1] 1인창조기업 확인 및 제출서류 자가진단표

### ① 1인 창조기업 확인

<https://www.k-startup.go.kr/common/knProject/application/ac/coCheckPop.do>

### ② 제출서류 자가진단표

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자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비창업자 | 기창업자<br>(개인) | 기창업자<br>(법인) |
| 입주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| ○            | ○            |
|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| ○            | ○            |
| 개인정보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| ○            | ○            |
| 이력서(사진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| ○            | ○            |
|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| ○            | ○            |
|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| ○            | ○            |
| 지방세, 국세 납입 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| ○            | ○            |
|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<br>(대표자와 상시 고용인력 있는 경우만 해당) | ×     | ○            | ○            |
|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| ×            | ×            |
|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| ○            | ○            |
|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| ×            | ○            |
|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| ○            | ○            |
| 가점증빙 및 이외 증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선택 제출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※ 가점 증빙 및 지식재산권, 인증, 교육 수료증 등 이외 증빙은 해당자 제출서류로 증빙 제출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
※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([k-startup 정회원 신청시 승인 이후 본인 출력가능](#))

#### ※ 가점사항

-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(1점)
- 만 39세 이하 청년 (예비)1인 창조기업 (1점)
-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(1점)
- 센터의 해당연도 중점특화분야(전자상거래)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(1점)
-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추천기업 (1점)
- 재기 1인 창조기업(폐업 사실 확인서 확인)
  -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(1점)
  -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(3점)

## [참고 2] 지원대상이 되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

### 지원대상이 되는 1인 창조기업 범위

#### □ 지원대상이 되는 1인 창조기업 범위\*

\* '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' 제3조제1항

-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없는 1인 창조기업
-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또는 지원사업 신청 당시 법 제3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,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

#### < 1인 창조기업 정의 및 유예기간 >

- (정의\*)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(단,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\*\*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)

\* '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' 제2조

\*\* '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' <별표 1>

- (유예기간\*) 1인 창조기업이 규모가 확대된 경우,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간주 (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)

\* '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' 제3조

#### <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(시행령 별표 1) >

| 구 분               | 해당 업종                 |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광업                |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  | 05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금속광업                  | 06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비금속광물 광업, 연료용 제외      | 07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광업지원서비스업              | 08         |
| 제조업               | 담배제조업                 | 12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| 19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    | 24         |
|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 |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35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수도사업                  | 36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하수·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<br>환경복원업  | 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7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                        | 38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9         |
| 건설업                        | 종합건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1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직별 공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2         |
| 도매 및 소매업                   |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5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6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매업, 자동차 제외(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| 47         |
| 운수업                        |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9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상 운송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공 운송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1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2         |
|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       | 숙박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5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음식점 및 주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6         |
|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          | 금융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4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 및 연금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5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<br>(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 | 66         |
| 부동산업 및<br>임대업              | 부동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8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임대업, 부동산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9         |
| 보건업 및<br>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| 보건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6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7         |
| 예술, 스포츠 및<br>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|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1         |
| 협회 및 단체,<br>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|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6         |

비고: 해당 업종의 분류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